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

운용계획 변경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849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27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5. 5.26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5. 5.29
4. 상정일자 :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23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5. 6.26)
 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¹⁾ (기획조정실장 정상훈)

- 의안번호 제2843호 「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,
- 14개 변경 안건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-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,855억원 증액 하였으며
- 도시재생기금,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1,663억원 증액하고,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

1)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4년 결산에 따라 「예치금」 이 당초 3,367백만원에서 7,410백만원으로 4,043백만원 증가하여, 2025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 또한 4,043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‘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’ 집행잔액 (3,955백만원), 이자수입(39백만원) 및 융자금 원금수입 (37백만원) 증가, 기본경비 집행잔액 (12백만원)
- 나. 예치금 증액에 따라 추가적인 예탁금원금 회수 불필요하여 「예탁금원금 회수」 금액 2,000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. 이에,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 예치」 금액이 당초 188백만원에서 2,230백만원으로 2,043백만원 증액(1087.9%)되었음

[2025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603	9,645	2,043	26.9
세 외 수 입	159	159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159	159	-	-
이 자 수 입	159	159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7,444	9,487	4,043	54.3
보 전 수 입 등	4,844	8,886	4,043	83.5
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477	1,477	-	-
예 치 금 회 수	3,367	7,410	4,043	120.1
내 부 거 래	2,600	600	△2,000	△76.9
예 탁 금 원 금 회 수	2,000	-	△2,000	△100
예 탁 금 이 자 수 입	600	600	-	-

[2025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 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603	9,645	2,043	26.9
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	7,400	7,400	-	-
장애인단체및사업지원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7,400	7,400	-	-
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	7,400	7,400	-	-
일반예산 (재무활동)	188	2,230	2,043	1087.9
보전지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188	2,230	2,043	1087.9
여유자금예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188	2,230	2,043	1087.9
기타	15	15	-	-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15	15	-	-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15	15	-	-

3. 검토의견²⁾

- 서울특별시는 지난 1999년,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,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을 운용하고 있음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① 예치금회수가 증가(40억 4,300만원)함에 따라 수입계획중 ①예치금회수 증가분(40억 4,300만원)과 ②예탁금원금회수 감액분(△20억원)의 차액

2) ■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■ 증감률 등의 경우,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,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(±0.1% 범위내) 차이 있음

(20억 4,300만원)을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에도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에 20억 4,300만원을 증액하여 예치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³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-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은 당초 1억 8,7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, 당초 지출계획보다 1,092.5%, 20억 4,3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이기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○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, 여유자금 발생규모를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둔 자원(예탁금원금회수)을 당초 계획보다 감액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수입계획함에 따라 지출계획에도 수입계획의 ①예치금회수와 ②예탁금원금회수 사이의 차액분(20억 4,300만원)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에 대한 수·지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것임

- 아울러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은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⁴⁾ 등을 고려하여 제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4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 제9조(장애인복지계정)

① (생략)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장애인단체의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7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
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가. 소위원회

○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
- 위 원 장 : 최민규(도시안전건설)

- 부위원장 : 김경훈(교육), 정준호(교통)

- 위 원 : 서호연(행정자치), 홍국표(기획경제)

이용균(환경수자원), 아이수루(문화체육관광)

도문열(보건복지), 봉양순(도시안전건설)

김종길(주택공간), 김원태(도시계획균형)

※ '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

8.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

9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나.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5. 6.26(목) 12:00~1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VII. 부대의결 : 「해당 없음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2025. 6.26)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8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4년 결산에 따라 「예치금」 이 당초 3,367백만원에서 7,410백만원으로 4,043백만원 증가하여, 2025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 또한 4,043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‘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’ 집행잔액 (3,955백만원), 이자수입(39백만원) 및 융자금 원금수입 (37백만원) 증가, 기본경비 집행잔액 (12백만원)
- 나. 예치금 증액에 따라 추가적인 예탁금원금 회수 불필요하여 「예탁금원금 회수」 금액 2,000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. 이에,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 예치」 금액이 당초 188백만원에서 2,230백만원으로 2,043백만원 증액(1087.9%)되었음

[2025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603	9,645	2,043	26.9
세 외 수 입	159	159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159	159	-	-
이 자 수 입	159	159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7,444	9,487	4,043	54.3
보 전 수 입 등	4,844	8,886	4,043	83.5
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477	1,477	-	-
예 치 금 회 수	3,367	7,410	4,043	120.1
내 부 거 래	2,600	600	△2,000	△76.9
예 탁 금 원 금 회 수	2,000	-	△2,000	△100
예 탁 금 이 자 수 입	600	600	-	-

[2025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603	9,645	2,043	26.9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-	-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7,400	7,400	-	-
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7,400	7,4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188	2,230	2,043	1087.9
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188	2,230	2,043	1087.9
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188	2,230	2,043	1087.9
기 타	15	15	-	-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15	15	-	-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15	15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강지윤 (☎ 2133-7447)